

<p>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7조제3항제5호 단서를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다만, 지역적 여건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심의를 거쳐 총 건설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7조제3항제4호중 “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”을 “공동주택”으로 한다.</p> <p>제33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④ 영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당해년도의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례)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회계년도부터 적용한다.</p> <p>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8조제4호중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25”로 한다.</p> <p>제12조제4호중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75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제3조제1항 단서 중 “노상주차장 하역주차구간의”를 “하역주차구간의”로 한다.</p> <p>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</p>	<p>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1항중 “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“공영주차장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조같은항 단서중 “노상주차장 하역주차구간의”를 “하역주차구간의”로 하며 같은조제2항제1호중 “주차카드”를 “주차쿠폰”으로 하고, 같은조같은항제2호 내지 제8호를 같은조같은항 제3호 내지 제9호로 하며, 같은조같은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2.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 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</p> <p>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3조의2(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)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주차요금·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시장에게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·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(이하 “해제비용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정수한다. 이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: 해제비용 미정수</p> <p>2.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: 해제비용 3만원 정수</p> <p>제5조제1항 본문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(이</p>
--	--